

법원, 정부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제동'

광주지법, 양극덕 할머니 거부에 '불수리'·이춘식 할아버지건은 '미접수' 수령거부 2명 타지역 법원서 반려 ...외교부 "강한 유감...이의절차 착수" 공탁소송 확전 가능성 속 대위변제안 법리적 판단 다시 도마에 오를 수도

법원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극덕 할머니(95)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대위변제' 배상금 공탁 개시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가 제3자 대위변제안으로 마련한 기금의 공탁을 통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려 했지만 광주지방법원이 공탁을 수리하지 않아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위변제안 자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다시 도마에 오를 수 있어 공탁 불수리 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외교부가 대위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 4명 중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양극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개시 신청서를 광주지법에 접수했다.

이에 광주지법 공탁관은 양 할머니에 대한 공탁은 '불수리' 결정을 하고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은 서류미비를 이유로 접수 받지 않았다.

외교부는 나머지 거부자 2명(故 박해옥 할머니 유족, 故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에 대해서도 3일 전주지방법원 등 상속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전국 법원에 공탁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법원은 공탁금 수령자를 상속인을 (유족 등으로) 수정하라는 취지로 보정 권고하고 모두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수리 결정을 한 광주지법 공탁관은 양 할머니가 대위변제 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명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할머니 측이 정부의 대위변제 안을 거부하는 명시적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공탁관은 피해자 측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는 민법 제469조 등을 고려해 불수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양 할머니의 법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희 변호사는 "법원의 불수리 결정은 대위변제안이 적법하지 않고 정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변제할 자격이 안된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얼마나 급했으면 관련 서류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까 싶다"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불수리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 결정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법원에 날을 세웠다.

정부는 공탁법상 불수리 처리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다시 공탁관에게 하는 것으로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수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반복할 수 있다. 반면 정부의 이의신청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광주지법으로 사건을 송부한다. 일명 '비송사건'으로 광주지법 법원이 불수리 결정이 적절하지 따지게 된다.

광주지법에서 불수리 결정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면 정부는 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측도 공탁 무효소송 제기

를 예고하고 있어 공탁 소송을 놓고 정부와 피해자 간 '마찰 2라운드'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불수리 처리의 이유에 대해서 정부와 재단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점도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분석이 맞다면 결국 정부의 대위변제안 자체의 적법성 논란이 다시 제기될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피해자 측도 정부가 대위변제안을 제안했을 때부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정부가 배상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송창은 민주시민회위원장 변호사도 "광주지법 사무처장은 '정부가 대위변제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위치에 있는지 여부도 아직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대위변제 기금을 공탁하는 것은 법률상으로도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4일 오전 서울 서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정부의 공탁 개시 절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제공)

"광주서 전세사기 당했다" 고소장 잇따라 경찰 수사

광주에서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동부경찰은 최근 광주시 동구 계림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 2명으로부터 임대사업자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들은 지난 2021년 8월께 A씨로부터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것을 권유받아 2년 전세를 계약하고 각각 보증금 1억 8500만 원씩을 냈다.

하지만 고소인들은 최근 국제세로부터 A씨가 국제 4억여원을 채납했다며 해당 아파트를 압류, 법원 공매에 넘길 예정이라는 안내장을 받았다.

이에 고소인들은 A씨가 국제 채납 사실을 알면서도 전세 전환을 유도한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전세 전환 당시 A씨가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전세 전환에 앞서 국제 채납 및 공매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보험 가입 약속 미이행 사실이 사기 혐의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광주북부경찰은 지난달 광주시 동구의 아파트 임대인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고소인은 지난해 초 B씨와 보증금 5000만원과 월세 25만원에 아파트 1년 임대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은 또 B씨가 임대 계약 당시 아파트 소유권을 신회사에게 넘겼는데도 자기 소유인 척 계약을 했다는 주장을 폈다.

경찰은 임대인이 고소인의 보증금을 가로채려 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변제자 지위 인정 관건...법조계 "피해자 거부 땐 공탁 효력 문제"

강제동원 배상금 제3자 대위변제 공탁...법적 효력은

단순 손배 3자 공탁 가능하지만 불법행위 따른 위자료 무효소송 가능

정부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시한 제3자 대위변제 공탁의 효력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공탁은 빚을 갚거나 피해 보전 등을 위해 금·물건을 법원에 맡기는 절차다.

정부는 제3자 대위변제 배상금 수령을 거부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이 마련한 기금을 법원에 맡겨 채무를 면하기 위한 일명 '3자 공탁'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법적절차 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공탁이 절차에 따라 이뤄지면 당사자들이 언제든 공탁된 배상금을 수령하고 관련 소송을 취하는 방식으로 법적 분쟁이 종료될 수 있다.

공탁이 이뤄지면 미쓰비시·일본제철 등 전범기업의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인정돼 소멸되고 대법원의 이들 전범기업에 대한 국내자산 매각절차도 중단될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전례가 없어 제각각 해석을 내놓고 있다. 먼저 채무를 변제하는 변제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민법상 제

3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할 수 없어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이라 공탁의 효력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법원은 법률상 이해관계인을 손익이 발생하는 법률적 위치 여부로 결정했는데 이번 사안인 경우 정부가 변제를 할 이해관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 대다수의 의견이다. 결국 정부는 공탁 등의 방식으로 채권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한일협약의 당사자가 정부인 만큼 이해관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채무의 성질도 문제가 된다. 대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 채무가 일반 기업의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단순 금전적 손해배상이라면 3자 공탁도 가능하겠지만, 이번 사건은 '불법행위에 의한 위자료 소송'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사 표현이 있다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변제를 하거나 공탁을 하지 않는다면 공탁의 효력에 대해 반론이 나올 수 있다.

정부가 일반 기업들의 채무를 양도받는 방법도 있지만 정부가 일반 기업의 채무를 양도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일반 기업들도 책임 자체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박철 광주지방변호사회 제2부회장은 "피해자들이 반대하지 않으면 제3자는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변제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거부하고 있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유래가 없는 일이다 보니 법리적으로 봤을 때 절차적 하자나 금액 등을 문제 삼아 공탁무효 소송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교사가 장애아동 학대 의혹 경찰, 학교 접근 금지 명령

진도군의 한 중학교 교사가 장애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진도군의 중학교 교사 A(58)씨를 지난달 22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에게 2개월 동안 학교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이 학교에 부임한 이후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에게 지속적인 언어 학대 및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수업 도중 해당 아동에게 "모자라다", "떨어지고 부끄럽다" 등 발언을 했으며,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한다며 교실 뒤에 서 있게 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학교 측은 지난달 21일께 또래 학생들의 제보를 듣고 학대 정황을 파악했으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친 뒤 2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열정을 갖고 교육을 한 것뿐, 아동학대를 한 것은 결코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심의제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시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금당부동산

도시형 생활주택 등 (나주시)

- 대지 954㎡ (상업지 288.6평)
- 건물 2,254㎡ (681.84평) 지상 5층, 2022.4 준공
- 도시형 생활주택 42세대, 오피스텔 7실 근린시설 73.4㎡
- 매도 45억 (감정 50억, 대출 25억)
- 임대 보증금 2억8천 월세 2,400만원 포함
- 이전은 법인이전가능하고 사업부지와 교환도 가능

장흥군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울포해수욕장인근)

- 경관 수려, 다세대, 숙박시설·펜션 등 적합
- 445평과 210평, 도로 좋음, 평당 100만원

무안군 윤남면 내리 3,940㎡ (1,191평)

- 공시가 45백 527천원 전원생활적합. 1억1,900만원

무안군 청계면 강정리 바닷가마을 대지 850.6㎡ (257평)

- 집 83㎡ 다세대분양 적합. 은행 5천 매도 2억7천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바닷가 절 땅 4,650㎡ (1,406평)

- 공시가 7,527만원. 투자에 좋음. 매매가 1억6천

화순군 동면 장동리 (776평)

- 조용한 생활적합. 7,200만원

고흥군 도화면 사덕리 전 포함한 산 47,537㎡ (14,380평)

- 투자 등 적합 1억5,500 (평당 10,778원)

전화 062-222-4994 / 010-2632-5659
FAX 062-222-4993